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13
----------	-------

발의연월일 : 2026. 5. 19.

발 의 자 : 박희승 · 박용갑 · 윤준병
정준호 · 김병주 · 이학영
서삼석 · 김남희 · 조인철
박해철 · 강준현 · 백선희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돌봄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의 활동 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향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

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보완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봉사시간 실적의 적립·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본인의 실적 적립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한 자 또는 그로부터 봉사시간 실적을 양도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노인복지시설 등에 해당 봉사시간 실적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노인 관련 기관·단

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돌봄 활동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양도의 요건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조의2(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보완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u></p> <p><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봉사시간 실적의 적립·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본인의 실적 적립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한 자 또는 그로부터 봉사시간 실적을 양도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u></p>

바에 따라 지정된 노인복지시설 등에 해당 봉사시간 실적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노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돌봄 활동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양도의 요건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